

# 서울시보

Hi Seoul  
SOUL OF ASIA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2992호 2010. 08. 19.(목)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독서한강수영장(2009.7.3 리모델링 개장)

기관의 장		공 람							
선 람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731-6847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5017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규 칙]

제376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제376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입법예고]

제2010-1472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10-1501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10

◆ 고 시

제2010-2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12

제2010-29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 18

제2010-29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 20

제2010-299호 도시관리계획(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

제2010-30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취소 ..... 35

제2010-301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1

제2010-302호 남산4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8

제2010-30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54

제2010-304호 남태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7

◆ 공 고

제2010-144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 59

제2010-1473호 「세계 빈곤퇴치의 날」 기념 사업 모집공고 ..... 60

제2010-1474호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고 ..... 61

제2010-1485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공고 ..... 61

제2010-1487호 건설업 영업정지(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62

제2010-1490호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공고 ..... 63

제2010-149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63

제2010-1494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64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0-12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 공고 ..... 65

◆ **구 고 시**

제2010-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중구) ..... 66

제2010-6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67

제2010-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양천구) ..... 69

제2010-28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 ..... 70

제2010-5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강서구) ..... 70

제2010-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영등포구) ..... 72

◆ **구 공 고**

제2010-577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구로구) ..... 75

제2010-8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운동장 : 올림픽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송파구) ..... 75

제2010-755호 방죽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 76

◆ **사업소고시**

제2010-138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 77

제2010-141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 77

◆ **사업소공고**

제2010-23호 병원장 직인 등록 및 폐기(서울특별시서북병원) ..... 78

제2010-30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 78

제2010-31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 79

제2010-19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서초소방서) ..... 79

제2010-20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서초소방서) ..... 80

제2010-21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 신규등록 공고(서초소방서) ..... 80

제2010-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강동소방서) ..... 80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017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7명 이내로”를 “30명 이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 2. 주요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27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함.(안 제10조 제5항 단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76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의 아목 및 자목에 따른 보조기준 및 방법”을 “제2항제2호 아목 및 자목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타.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료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1. 제10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2. 임대료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제13조의** 제목 중 “대출신청”을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 대출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3. 예금통장 사본

**제15조제1항** 중 “7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현황과”를 “현황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기준으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보조를 신청한 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제2항의 지급가능 인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연도 임대료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 1. 1순위 :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 2순위 :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 3. 3순위 :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 4순위 :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상계(相計)하는 조건으로 매월 25일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주택 소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도 중 추가로 선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대료 보조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대출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남/여)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⑤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 세대 <input type="checkbox"/> 재해로 인한 세입자 <input type="checkbox"/> 철거민				
⑥가 족 수	(   )명 [본인, 처, 자(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⑦세대구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근로능력
					유·무
입주대상 임대주택	⑧위 치				
	⑨임대주택 유 형	<input type="checkbox"/> 공공임대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 <input type="checkbox"/> 재개발임대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임대			
	⑩임대보증금	원	⑩월 임대료	원	
⑫대 출 신 청 액	금 원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대출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 3. 건강보험납입증명서 4.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소득확인 서류 5. 부동산(토지)소유(미소유) 확인서 6. 자동차 소유(미소유) 확인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대료 보조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 . (남/여)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택	
					H.P		
⑤신청자격							
⑥가족수 ( )명 [본인, 처, 자(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⑦세대구성 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근로능력		
					유·무		
					유·무		
					유·무		
입주대상 임대주택	⑧위치						
	⑨주택현황	침실수 : 개(거실겸용 포함) / 부엌유무 : 유, 무(식사실 겸 부엌 포함)					
	⑩임대료	임대보증금 : 원	월 임대료 : 원				
⑪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본인(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주택 소유자)은 위의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 중임을 확인하며, 위의 신청인이 임대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의 계좌에 월별 입금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로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유자 : (인)						
	⑫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⑬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료 보조금을 본인(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⑭사유 :						
	⑮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료보조 신청자격 입증서류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옥주 변동에 따라 보조금 입금대상 변경시 신청인(세입자)은 그 사실을 자치구(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된 가옥주의 계좌번호 제출하여야 함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 3. 건강보험납입증명서 4.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소득확인 서류 5. 부동산(토지)소유(미소유) 확인서 6. 자동차 소유(미소유) 확인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전세가격 상승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계정 기금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임대료 보조대상자 추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일정액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에 대한 보조대상 제외 규정 신설함 (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 나. 임대료 보조 신청서류를 명문화함 (안 제1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다. 임대보증금 대출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저소득층 부담 완화함 (안 제15조제1항)
  - 라.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적격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명문화함 (안 제16조제3항 본문)
  - 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규정 신설함 (안 제16조제3항제1호)
  - 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임대료 보조금 입금 대상을 “보조대상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변경함 (안 제17조제1항)
  - 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376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의 범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하수도사업
-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종합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간선 하수도사업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사의 연기사유)** 조례 제14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도로굴착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관리청(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를 “시장”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이란 관련법에 따라 단지(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준공하고 단지 내 건축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그 밖에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자치구청장 시행사업 중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사업관리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구청장 시행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타행위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지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에 대한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3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472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이 폐지되고「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근거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 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급수설비과(전화 : 3146 -1474, FAX 3146-1429, E-mail : pkyly@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01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10.5.11)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쉬운 용어사용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나. 부서 또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대상공사와 자치구 사업중 국비·시비보조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기관을 자치구·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기관까지 확대 개정함(안 제3조)
- 라. 구체적인 계약심사 대상금액의 범위를 신설·조정하고,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마. 재심사 요청 사업에 대한 발주부서의 의견 검토 등 적절한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을 완화함(안 제7조)
- 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구성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문공사 및 분야별 특수공법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및 부위원장 선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계약심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과(전화 : 02)6360-4942, FAX : 02)6360-4939, E-mail : pjhl50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1(2010.2.2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215(2010.7.1)호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울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
-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 원남동 사거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2) 명 칭 : 울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30m 연장 800m (지하차도 34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0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동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와룡동	2-3	대	234.9	학교법인 용문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2가 96-1					
2	와룡동	12-2	주유소	110.7	이해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304	1/2	대한 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이해승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1/2	현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근저당권	
3	와룡동	13	대	2.2	이해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304	1/2	대한 석유공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이해승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1/2	현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근저당권	
4	와룡동	16-1	대	0.1	이해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304	1/2	현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근저당권	
					이해승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1/2				
5	와룡동	16-7	대	8.7	이해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304	1/2	현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근저당권	
					이해승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1/2				
6	권농동	8-2	대	8.8	이성희	인천시 남구 용현동 46-13					
7	권농동	9-2	대	7.2	이성희	인천시 남구 용현동 46-13					
8	권농동	11	대	2.7	정화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24					

연번	동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9	권농동	115-3	대	80.7	학교법인 경희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10	권농동	116-3	대	26.3	학교법인 경희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11	권농동	115-5	대	10.4	학교법인 경희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12	권농동	120-2	대	127.5	김복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6 (101호)		한빛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13	권농동	121-2	대	35.5	김복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6 (101호)		한빛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14	원남동	149-3	도로	2.5	전전승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49					
15	원남동	150-2	대	145.5	학교법인 용문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2가 96-1					
16	원남동	151-2	대	155.3	임희원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50-1 구기현대빌라 201-103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19	근저당권	
								중소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17	원남동	151-6	대	86.5	지식경제부						
18	원남동	171-2	대	88.6	장성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6-1 주공아파트 318-20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19	원남동	177-1	대	40.5	권혁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72-6 주나트 302호	13/15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신화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72-6 주나트 302호	2/15	서울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연번	등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구조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와룡동	12-2	주유소	40.4	캐노피(철골)	이해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304	1/2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64-5	근저당권	
						이해승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1/2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시 대신읍 대죽리 640-6	근저당권	
				1식	주유기등 각종 주유소 시설	현대오일뱅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빌딩20층					
2	와룡동	13	대	2.9	철근콘크리트	이해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304	1/2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64-5	근저당권	
						이해승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1/2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시 대신읍 대죽리 640-6	근저당권	
3	권농동	120-2	대	28.9 131.5 131.5 131.5 131.5	철근콘크리트(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1층) 철근콘크리트(2층) 철근콘크리트(3층) 철근콘크리트(4층)	김복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6 (101호)		한빛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권	
4	권농동	121-2	대	33 0.8	철근콘크리트 가건물(벽돌)	김복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6 (101호)		한빛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권	
5	권농동	115-3	대	53 53 53 1식	철근콘크리트(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지하 3층) 화단	학교법인 경희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6	권농동	9-2	대	81.2	철근콘크리트	이성희	인천시 남구 용현동 46-13					
7	권농동	11	대	2×2m	목재판	정화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24					

연번	동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구조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8	원남동	150-2	대	85.4 85.4 85.4 84.6 84.6 84.6 84.6 1.7 13×2m	철근콘크리트(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1층) 철근콘크리트(2층) 철근콘크리트(3층) 철근콘크리트(4층) 철근콘크리트(5층) 지하환풍구 담장(벽돌)	학교법인 용문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2가 96-1					
9	원남동	151-2	대	64.6 63.2 63.2 6.5	철근콘크리트(1층) 철근콘크리트(2층) 철근콘크리트(3층) 가건물(벽돌)	임희원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50-1 구기현대빌라 201-103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19	근저당권	
									중소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근저당권	
10	원남동	151-6	대	16.6 2.6 16.6	철근콘크리트 화단 가건물(벽돌)	지식 경제부						
11	원남동	171-2	대	37.1 22.6 41.6 36.3 2 43.1	철근콘크리트(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1층) 철근콘크리트(2층) 철근콘크리트(3층) 가건물(벽돌) 철근콘크리트(1층)	장성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6-1 주공아파트 318-20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영 업 권 조 서

연번	등 명	지 번	상 호 명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권농동	120-2	(주)한국프로마트	김종영	종로구 권농동 120-2	
2	권농동	120-2	매일경제종로지국	정달영	종로구 권농동 120-2	
3	권농동	120-2	유성프린팅	유연목	종로구 권농동 120-2	
4	권농동	120-2	유성디지털	유연목	종로구 권농동 120-2	
5	권농동	120-2	도봉건축사사무소	박시익	종로구 권농동 120-2	
6	권농동	121-2	덕승오토바이	박금선	종로구 권농동 121-2	
7	권농동	9-2	삼정기업	이성희	종로구 권농동 9-2	
8	원남동	151-2	(주)대륙전선	임희원	종로구 원남동 151-2	
9	원남동	171-2	가르시아	봉현중	종로구 원남동 171-2	
10	원남동	171-2	명지전기	장성환	종로구 원남동 171-2	
11	원남동	171-2	노나	신광호	종로구 원남동 171-2	
12	원남동	171-2	에세르	김상우	종로구 원남동 171-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2.25)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문화시설)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220호(2010.7.1)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9외 2필지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건립

나. 사업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9외 2필지

다. 사업의 규모

- 부지 면적 : 908.2㎡(건축면적:240㎡)
- 건축 규모 : 지상 1층, 지하2층 (총면적 : 1,70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731-6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돈화문로 공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 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와룡동 5-9	주	260.2	260.2	주유소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	지상권	
2	와룡동 5-10	주	548.8	548.8	주유소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	지상권	
3	와룡동 5-14	대	99.2	99.2	갤러리	우병달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447	제기동새마 을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28-6	근저당 권	
총 계 : 3필지			908.2	908.2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공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와룡동 5-9,-10	건축물 (기계실,창고)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88.7	지에스칼텍스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			
		건축물 (주유소)	1층 철근콘크리트	203.0					
		건축물 (주유소)	2층 철근콘크리트	203.0					
		건축물 (주유소)	3층 철근콘크리트	185.2					
		건축물	옥탑 철근콘크리트	32.2					
		건축물 (비거리)	캐노피 철골조	255.9					
		담장 (방화벽)	블록조	높이 2m					
		바닥포장	에폭시	1식					
		바닥계단	블록	1식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	와룡동 5-9,-10	SC제일은행 현금입출금기	철제 (가건물)	3.6	SC제일은행 안국역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5			
3	와룡동 5-14	건축물	1층 철근콘크리트	90.5	우병달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447	제기동새마 을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28-6	근저당권
		건축물	2층 철근콘크리트	90.5					
		건축물	3층 철근콘크리트	90.5					

**영업권 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 고 (이해 관계인)
					성 명	주 소	
1	와룡동 5-9,-10	비원주유소  (폐수처리시설, 탱크조실, 유류저장이중탱크, 위험 물시설, 유수분리조, 주유 기설치대, 하수도시설, 캐 노피면조명, 상호 라이트 박스 등 간판류, 편의점 시설물 등 포함)	1식	석유판매업	대성석유(주) 박찬욱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200-2	지에스칼텍스 (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	와룡동 5-9,-10	조이마트 (편의점)	1식	소매업 편의점	대성석유(주) 박찬욱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200-2	
3	와룡동 5-14	블루닷 마르델아르페	1식	화랑 전시기획	박찬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1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2.25)로 도시관리계획(『문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220호(2010.7.1)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2-2 외 7필지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돈화문국악예술당 건립공사

나. 사업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2-2외 7

다. 사업의 규모

- 부지 면적 : 518.5㎡(건축면적:250㎡)
- 건축 규모 : 지상 1층, 지하3층(연면적:1,63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 성 명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731-6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돈화문국악예술당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1	와룡동 12-2	주유 소용 지	106.4	주유소	이해옥 (1/2지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압류	종로구	세무1과-1426 (2009.2.6)
							압류	성남시 분당구	세무2과-3267 (2010.3.30)
							압류	성남세무서	소득세과-5444 (2010.7.19)
							근저당권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이해승 (1/2지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1블럭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근저당권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2	와룡동 13	대	60.6	주유소	이해옥 (1/2지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근저당권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이해승 (1/2지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1블럭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근저당권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3	와룡동 14-1	대	97.2	주유소	최경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4	와룡동 14-2	대	71.4	주유소	최경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5	와룡동 16-1	대	95.8	주유소	이해옥 (1/2지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이해승 (1/2지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1블럭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6	와룡동 16-2	대	66.1	주유소	최경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근저당권	대한석유공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7	와룡동 16-7	대	11.1	주유소	이해옥 (1/2지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이해승 (1/2지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1블럭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22-403	근저당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8	와룡동 16-8	대	9.9	주유소	김군자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6-2	없음	없음	없음
총 계 : 8필지			518.5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돈화문국악예술당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종로구 와룡동 12-2 12-4 13 16-1 16-2 16-7 14-1 14-2	건축물 (1층)	벽돌/ 슬라브	108.3	이해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37동 304호	압류	반포세무서	조사과-2006 (2007.9.14)
		건축물 (2층)	벽돌/ 슬레이트	97.7					
		1층 부속건물 (화장실)	벽돌/ 슬라브	9.8					
		1층 부속시설 (기계실)	벽돌/ 슬라브	3.6					
		1층 부속건물 (세차장)	벽돌/ 철재함석	40.4					
		캐노피 (비가리)	철골조	86.8					
		담장 (방화벽)	블록조	높이 2m 길이28m					
		대문	철재	길이 5m					
		수목	철쭉 라일락	24식 6식					
							압류	국민건강보 험공단성남 남부지사	고객지원부-1012 (2010.3.17)
							압류	종로구	세무2과-6286 (2010.4.16)
							근저당권	현대오일뱅 크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영업권 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돈화문국악예술당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 고 (이해 관계인)
					성 명	주 소	
1	와룡동 12-2	돈화문주유소 (세차기,폐수처리기,세차 기도목수조,라이트박스, 심볼마크,플렉스페이스, 가격표시판,세차장간판, 주유기7기,디지털포스시 스템,탱크레벨게이지5기, 지하탱크5기 포함)	1식	석유판매업 및 세차업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최경옥 이해육 이해승  (영업권 관련 분쟁중)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9호

**도시관리계획(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3호(2009.07.02)로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호 일대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배치,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II.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한국 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159-6,7,8호	41,602.3	-	41,60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602.3	-	41,602.3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602.3	-	41,602.3	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강남구 삼성동 159-7,8호	2,796	233	12	건고시 121호 (85. 2.26)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정류장	여객 자동차터미널	강남구 삼성동 159-6호	13,000.5	-	13,000.5	서고시 204호 (85. 3. 26)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	-	148,784.0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기정			-	-	41,602.3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변경	D1	190,386.3	①	강남구 삼성동 159-8호	18,403.4	
			②	강남구 삼성동 159-7호	10,198.4	
			③	강남구 삼성동 159-6호	13,000.5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3개 필지)	특별계획구역 (3개 획지계획)	획지계획 수립	•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내 여건(도시계획시설 등의 포함)을 고려하여 필지별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수립함

4.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

구분	도면표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고
불허 용도	2	○전층 불허용도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좌동	
권장 용도	Ⅲ	○전층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	좌동	
지정 용도	A	-	○최상층 지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단, 관광호텔은 최상층 및 지상3~4층) ·관광휴게시설 중 전망탑(단, 관광호텔에 한함)	

- 주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 '1층전면'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3)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4) 현대백화점 남측 저층부는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유럽풍 카페 및 간이 야외공연장 설치

(2) 건축물 개발밀도

가) 건폐율

구분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 이하	좌동	

나) 용적률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이하	좌동
	허용용적률	800%이하	좌동
	상한용적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준수	좌동

다) 높이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기준높이	100~200m이하	200m이하
	최고높이	120~250m이하	250m이하

(3) 건축물의 배치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콘티넨탈호텔, 현대백화점 테헤란로변 폭 20m</li> <li>•현대백화점, 공항터미널 아셈길변 폭 5m</li> <li>•특별계획구역내 주요 시설변 폭 5m</li> </ul>	좌동	

- ※ 현대백화점 배치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사항) : 건축한계선까지 증축하고 전면부 보행지장물(12m 계단실) 이전설치
- 전면부 계단실(폭 12m)을 폐지하여 공지 및 보행공간 추가(현재 6.5m→변경 20m) 확보(건물 안으로 이전설치)
  - 대상지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2m×2m, 2열, 215.5m)은 사업자 부담(현대백화점 및 인터콘티넨탈호텔)으로 이전설치하되, 하수암거 이전시 여건상 사유지내 매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지내 부지제공(별도 구분지상권 설정)
  - 옥상 생태공원 및 친환경에너지시설을 조성 설치하여 24시간 전면개방(전용E/V설치)

(4) 건축물의 외관·형태 등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고
1층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차이를 10cm미만으로 조성</li> <li>•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li> </ul>	좌동	
기존 건축물과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해야 함</li> <li>•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 1층개구부의 높이, 난간벽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li> </ul>	좌동	
외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 20m이상의 가로 및 폭 12m이상 가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 금지</li> </ul>	좌동	
투시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헤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 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설치</li> </ul>	좌동	
측면 이격공지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 이고,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li> </ul>	좌동	
셔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li> </ul>	좌동	
지하층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를 설치할 수 없음</li> </ul>	좌동	
탑상형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폐율 40%이하의 탑상형 건축물 입지 권장</li> </ul>	좌동	
피로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콘티넨탈호텔 저층부 피로티 부분은 후면의 공개공간과 연계를 위해 폭 8m이상, 높이 6m이상 확보</li> </ul>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가) 공개공지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개공지	•테헤란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폭 10~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콘티넨탈호텔 : 테헤란로변 폭15m 공개공지 설치</li> <li>•현대백화점 : 테헤란로변 폭10m 공개공지 설치</li> <li>•공개공지 안에 있는 기존 지하비상출입구는 건축물 내부 이전</li> <li>•테헤란로변의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면적만큼을 공개공지 등으로 추가 확보</li> </ul>	

※ 인터콘티넨탈호텔의 테헤란로변 공개공지내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면적(213㎡)만큼을 부지내 공개공지로 추가 확보 (단, 공개공지 위치지정 안함 - 건축계획에 의거 위치변경 가능)

나) 공공보행통로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무역센터부지와외의 보행편의성 및 연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콘티넨탈호텔 :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li> <li>•현대백화점 :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li> <li>•도심공항터미널 : 부지 남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li> </ul>	

(2) 교통처리계획

가) 차량동선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테헤란로 및 아셈길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기존 인터콘티넨탈호텔부지, 현대백화점부지, 도심공항터미널 기존 차량진출입구 유지 단, 인터콘티넨탈호텔과 현대백화점 사이의 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최소폭 3m로 존치하고, 바닥재의 재질 및 패턴 등 변화를 통해 보행의 연속성 유지)</li> </ul>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

구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 고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 - 12271(2007.12.21)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적용 권장	생태면적률 20% 이상	

6.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1)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α	◦ n=공동개발 필지수, n=2→α=0.1 n=3→α=0.2 n=4이상→α=0.3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0.1	건축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시. 단, 노유자시설은 건축면적(주차장제외)의 5%이상
		특정층 권장 (규모 및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1층바닥면적) × 0.2	해당 층면적의 50% 이상시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 피로티 구조 α=0.5 ◦ 침상형 구조 α=1.0 ◦ 개방형 구조 α=1.0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0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5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0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외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0.05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시설 (탄소마일리지 포함)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에너지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 0.08	◦ 대상·일반건축물(주상복합건 축물 포함) ◦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기 능지표 및 친환경 건축물 인 증제」의 등급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적용 ◦ 각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 복 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 0.05	
	에너지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 0.08	
		2등급		기준용적률× 0.05	
	친환경 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0.08	
		2등급		기준용적률× 0.05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노유자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이상  
 3.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또는 보행통로 조성시 등)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시에는 소수점 단위의 건축한계선은 인정하지 않음) 단, 높이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7. 탄소마일리지 : 강남구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따름  
 8. 조성 및 시설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용적률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본 계획 결정이전 기 공동개발(준공된 건축물)된 필지의 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배제

■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적 용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

(2) 높이 완화

■ 기준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계 획 내 용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sup>1)</sup> 조성시 기준높이 × [1 +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등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 기부채납시 <sup>2)</sup> 기준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 당초의 대지면적)}

- 주1)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건폐율 강화에 의한 공개공간,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지하철연결통로 등을 말함  
 - 공개공간 항목 중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전면공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하철연결통로'는 폭 4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 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한다.

- '피로티구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한다.
- 주2)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기준높이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가 기준높이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 조성' 항목의 우선 적용을 권장하며, 이 때 추가되는 전면공지 폭에 대해서 소수점은 인정하지 않음
  - ※ 기준높이 완화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7.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권한: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가구 및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자율적 공동개발
3.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계획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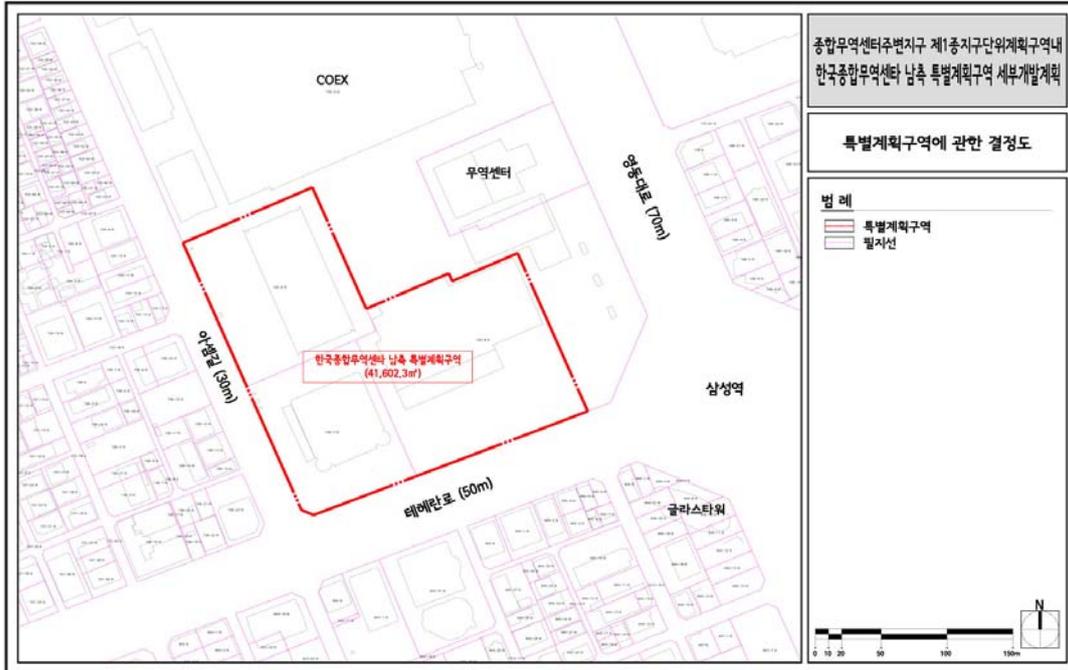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생략(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도시관리계획(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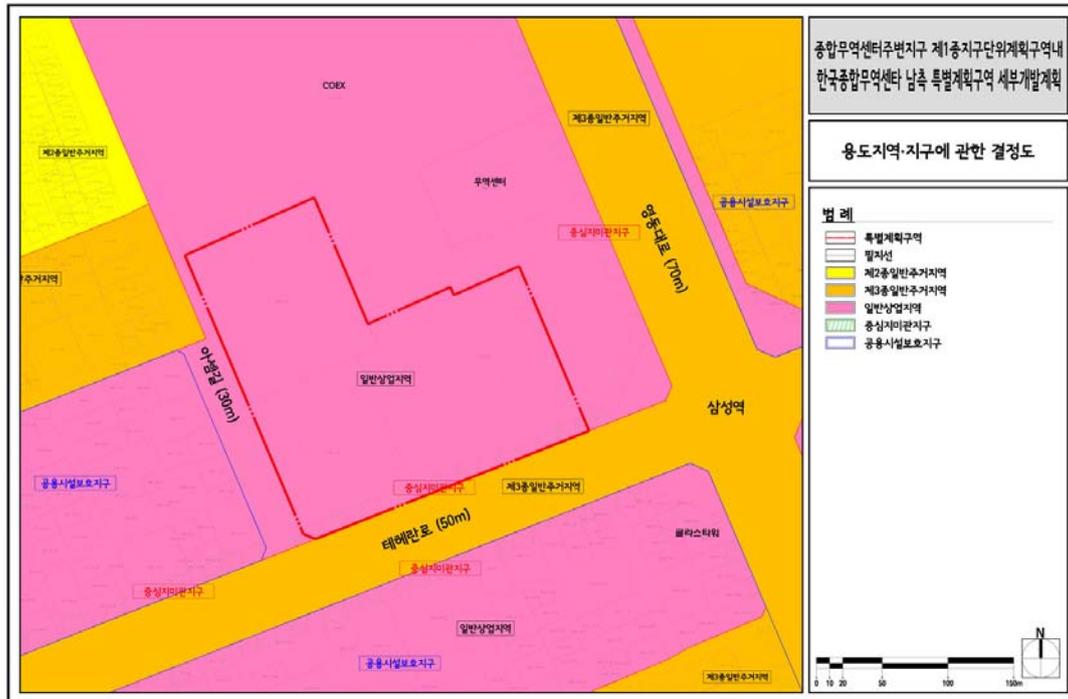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6),  
 강남구 도시계획과(☎02-2104-18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도시관리계획(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취소**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76호(2010.5.13)로 행위제한 중인 구역 중 아래와 같은 구역의 행위제한을 취소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행위제한 취소구역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비고
4	광진	군자동	127-1	10.7	
7	성북	석관동	285	8.0	
8	성북	하월곡동	90-155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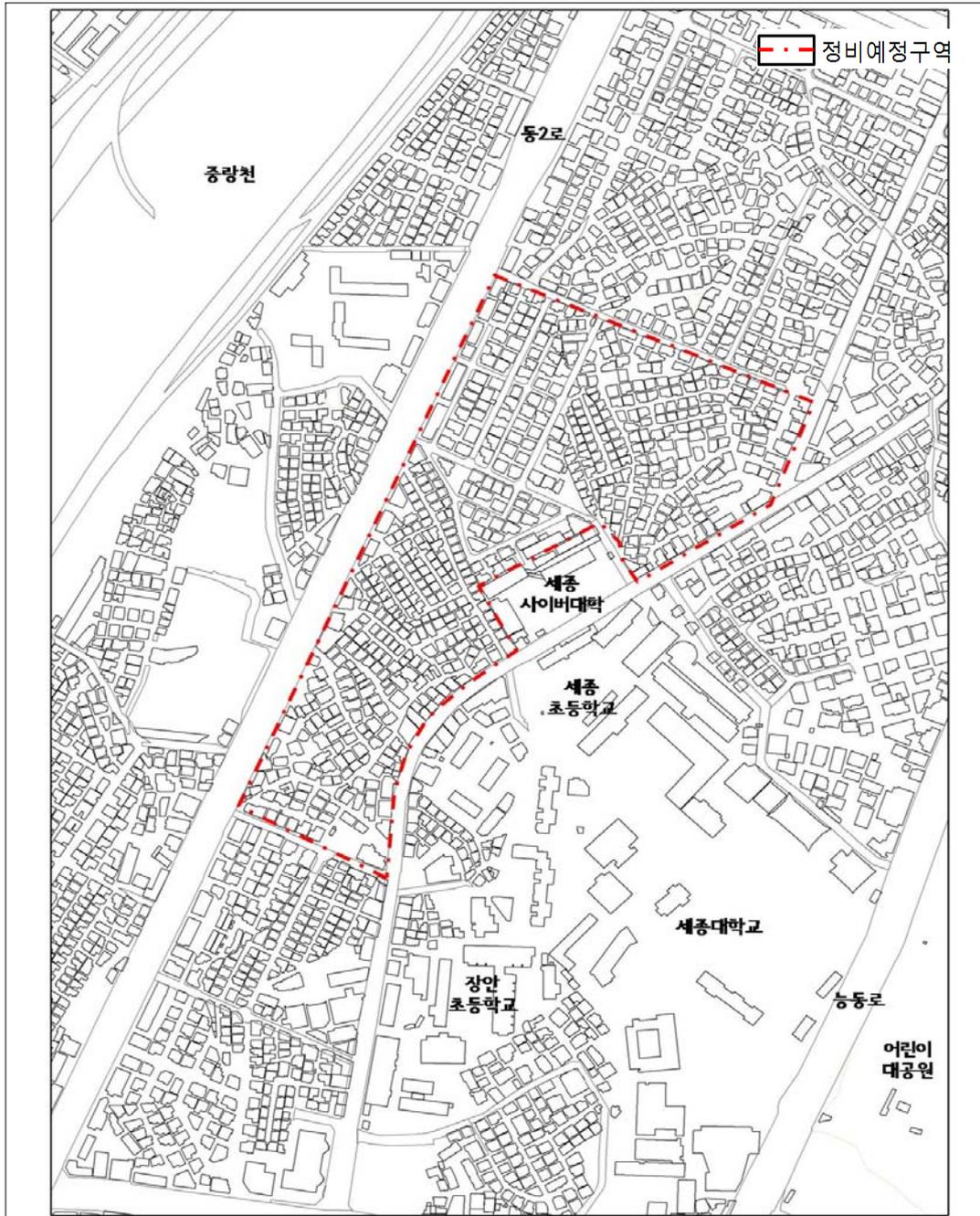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ha)	비고
1	종로구	충신동	6	4.3	
17	구로구	오류동	1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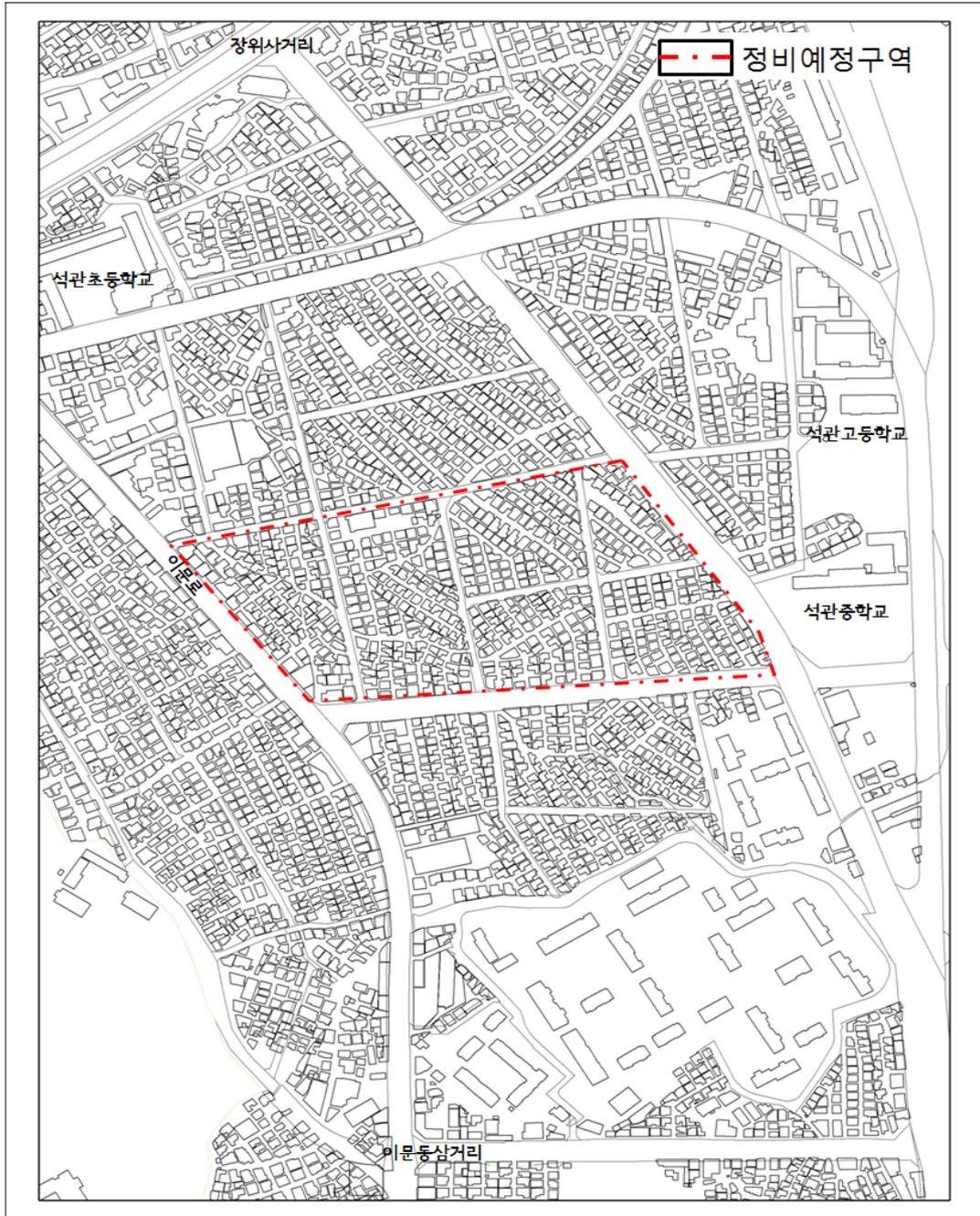
2. 행위제한 취소 사유 : 정비구역지정 요건 미달로 정비예정구역 입안 취소

3. 행위제한 취소 지역도면 : 따로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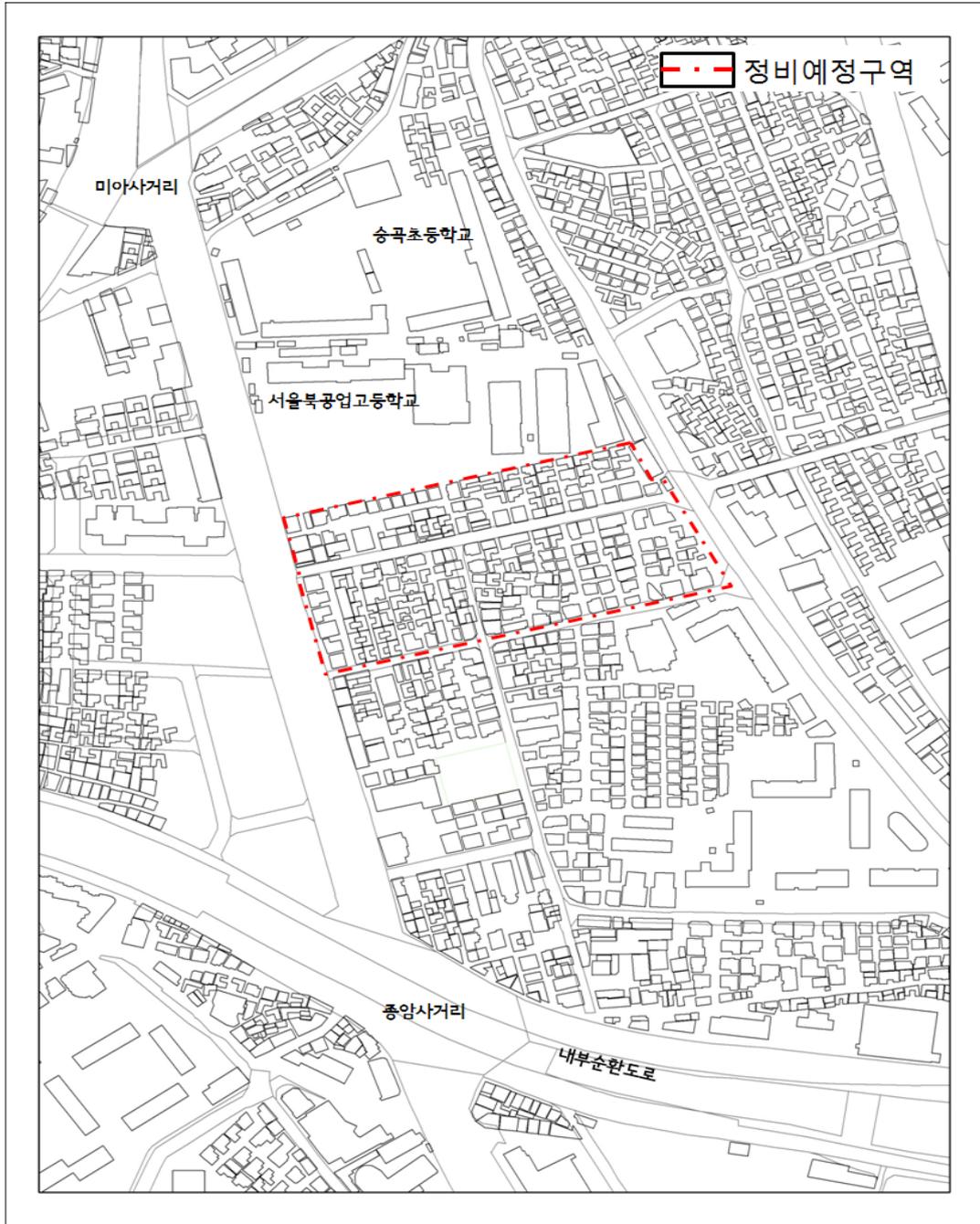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4	광 진	C	군자동	127-1	10.7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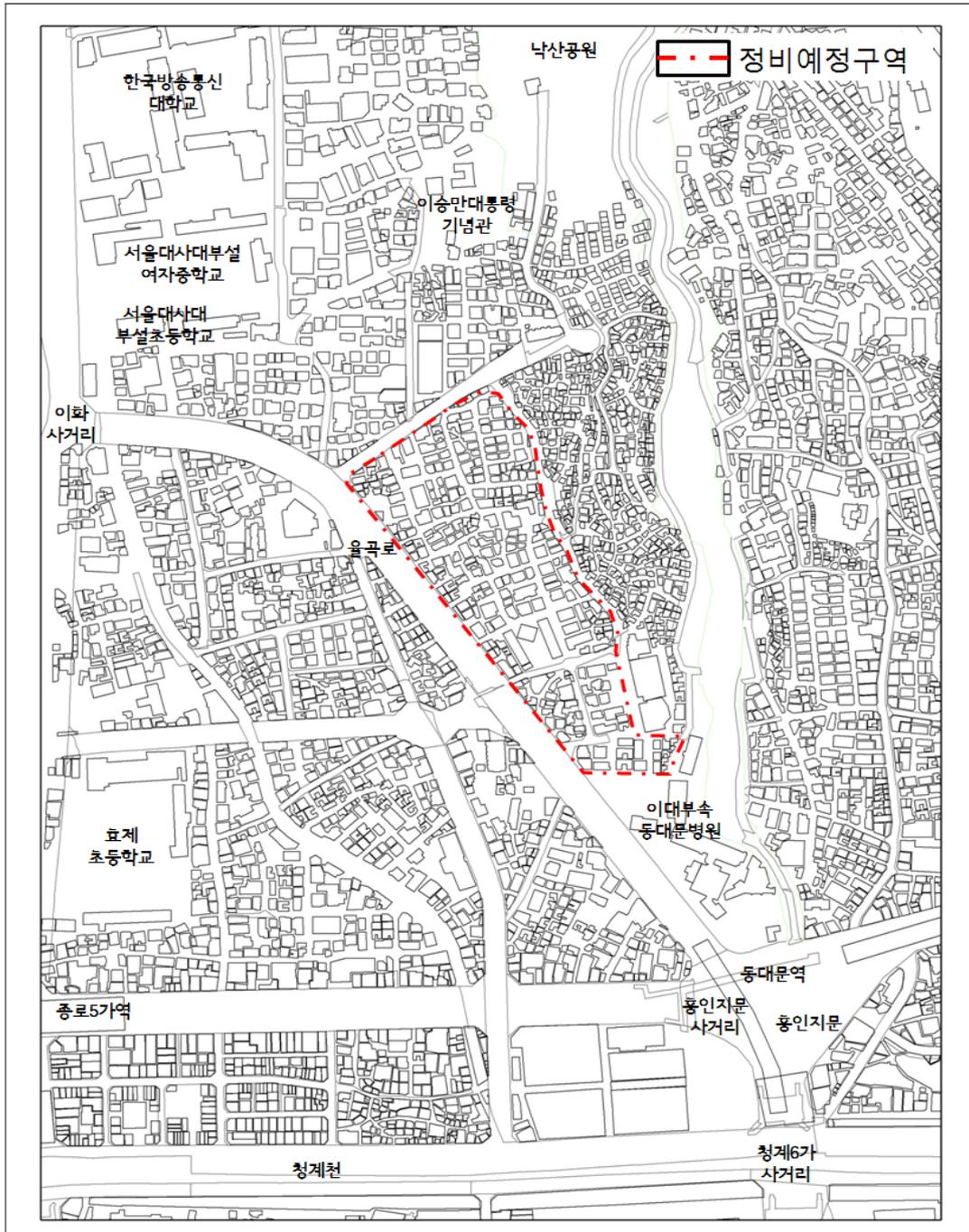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7	성 북	B	석관동	285	8.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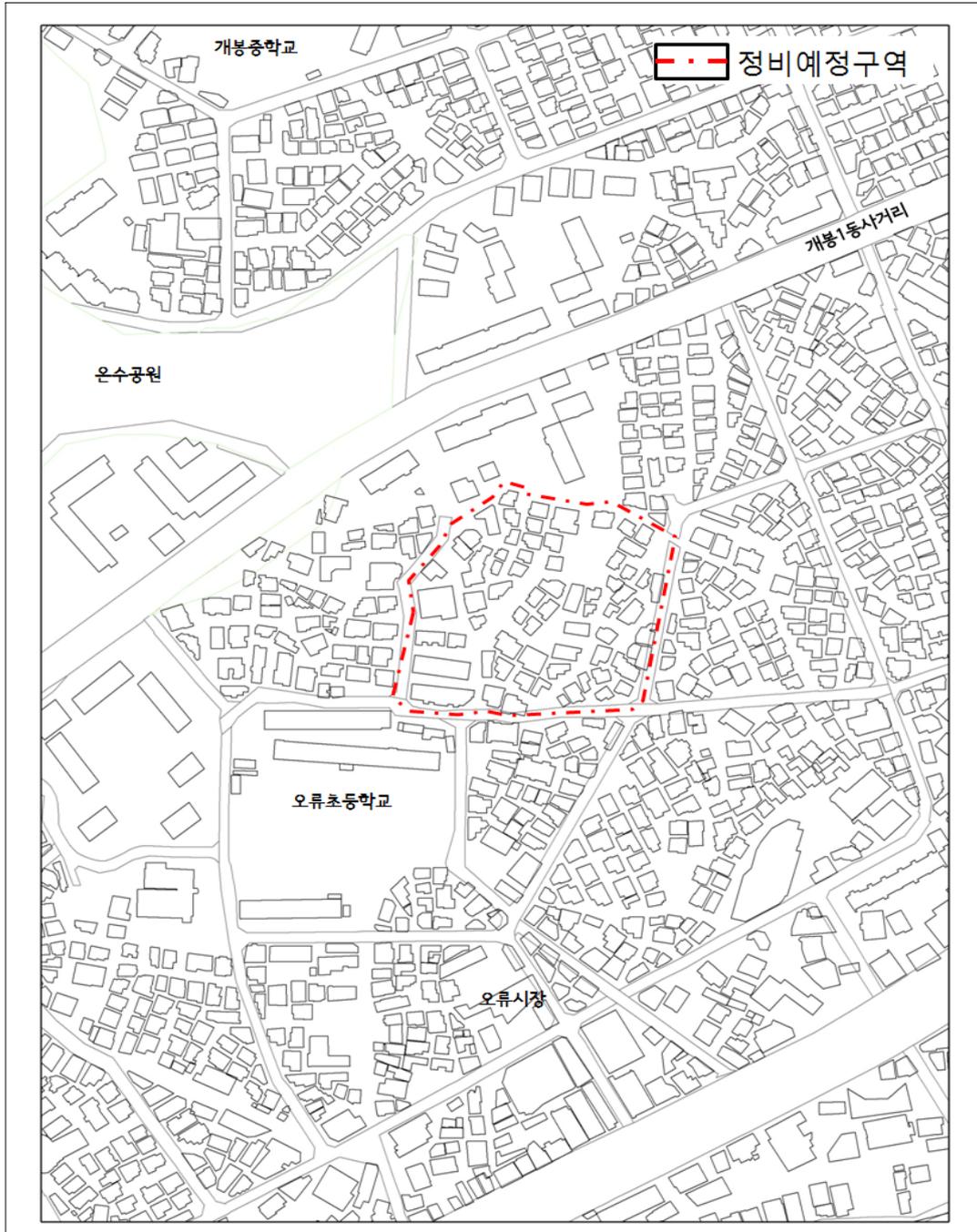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8	성 북	B	하월곡동	90-1557	3.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1	종로구	충신동	6	4.3	170	60	7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7	구로구	오류동	19	1.5	190	60	7	2	단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1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호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2009.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호(2010.2.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된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건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시설 보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위치 :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3. 면적 : 604,178㎡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15-7591) 및 중부푸른도시사업소(☎3783-5970)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4,178.00	85,839.47	20	10,185.74	47,237.38	209	604,178.00	85,839.47	20	10,184.77	47,235.71	209	
기 반 시 설	소 계	77,723.44	42,223.44	0	0.00	0.00	33	77,723.44	42,223.44	0	0.00	0.00	33	
	도 로	67,122.00	31,622.00				67,122.00	31,622.00						
			(35,500.00)					(35,500.00)						
	광 장	10,601.44	10,601.44				(33)	10,601.44	10,601.44				(33)	
	조 경 시 설	957.29	957.29				7	957.29	957.29				7	
	유 희 시 설	0.00	0.00				0	0.00	0.00				0	
	휴 양 시 설	5,983.60	5,983.60	1	64.17	64.17	107	5,983.60	5,983.60	1	64.17	64.17	107	
	교 양 시 설	11,783.95	10,112.46	7	5,422.78	29,156.33	3	11,783.95	10,112.46	7	5,422.78	29,156.33	3	
	운 동 시 설	3,041.14	3,041.14				24	3,041.14	3,041.14				24	
	편 익 시 설	22,948.34	22,935.23	11	4,381.79	17,596.98	35	22,948.34	22,935.23	11	4,380.82	17,595.31	35	
	관 리 시 설	586.31	586.31	1	317.00	419.90		586.31	586.31	1	317.00	419.90		
	녹 지 및 기타	481,153.93						481,153.93						
	시 설 율 (법정 40%)	(85,839.47 / 604,178.00) * 100 = 14.21%					(85,839.47 / 604,178.00) * 100 = 14.21%							
	건 폐 율 (법정 10%)	(10,185.74 / 604,178.00) * 100 = 1.69%					(10,184.77 / 604,178.00) * 100 = 1.69%							

2. 시설조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04,178.00	85,839.47		20	10,185.74	47,237.38	209			604,178.00	85,839.47		20	10,184.74	47,235.71	209		
기반 시설	소계		77,723.44	42,223.44					33			77,723.44	42,223.44					33		
	도로		67,122.00	31,622.00 (35,500.00)								67,122.00	31,622.00 (35,500.00)							
	광장	가		10,601.44	10,601.44					33	가		10,601.44	10,601.44					33	
		가-1	중구 남창동 205-4	(607.93)	(607.93)					(2)	가-1	중구 남창동 205-4	(607.93)	(607.93)					(2)	
		가-2	중구 남창동 205-4	(410.88)	(410.88)					(1)	가-2	중구 남창동 205-4	(410.88)	(410.88)					(1)	
		가-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69.32)	(69.32)					(1)	가-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69.32)	(69.32)					(1)	
		가-4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106.15)	(4,106.15)						가-4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106.15)	(4,106.15)						
		가-5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12.95)	(412.95)					(1)	가-5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12.95)	(412.95)					(1)	
		가-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607.04)	(607.04)					(11)	가-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607.04)	(607.04)					(11)	
		가-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546.42)	(2,546.42)					(2)	가-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546.42)	(2,546.42)					(2)	
		가-8	중구 예상동 8-1	(435.98)	(435.98)					(3)	가-8	중구 예상동 8-1	(435.98)	(435.98)					(3)	
	가-9	중구 예상동 산5-6	(1,404.77)	(1,404.77)					(12)	가-9	중구 예상동 산5-6	(1,404.77)	(1,404.77)					(12)		
조경 시설	소계		957.29	957.29					7			957.29	957.29					7		
미로정원	타-1	중구 회현동1가 100-177	(359.12)	(359.12)						타-1	중구 회현동1가 100-177	(359.12)	(359.12)							
안개분수	타-2		(10.40)	(10.40)						타-2		(10.40)	(10.40)							
실개천	타-3		(536.92)	(536.92)					(7)	타-3		(536.92)	(536.92)					(7)		
연못	타-4	중구 예상동 산5-6	(50.85)	(50.85)						타-4	중구 예상동 산5-6	(50.85)	(50.85)							
휴양 시설	소계		5,983.60	5,983.60		1	64.17	64.17	107			5,983.60	5,983.60		1	64.17	64.17	107		
	다		5,983.60	5,983.60		1	64.17	64.17	107	다		5,983.60	5,983.60		1	64.17	64.17	107		
	다-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3.59)	(53.59)						다-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3.59)	(53.59)							
	다-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1.02)	(41.02)						다-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1.02)	(41.02)							
	다-3	중구 남대문로5가 467	(35.52)	(35.52)						다-3	중구 남대문로5가 467	(35.52)	(35.52)							
	다-4	중구 남대문로5가 467	(69.65)	(69.65)						다-4	중구 남대문로5가 467	(69.65)	(69.65)							
	다-5	중구 남대문로5가 467	(54.65)	(54.65)						다-5	중구 남대문로5가 467	(54.65)	(54.65)							
	다-6	중구 남대문로5가 467	(30.75)	(30.75)						다-6	중구 남대문로5가 467	(30.75)	(30.75)							
	다-7	중구 회현동1가 산1-2	(149.54)	(149.54)					(2)	다-7	중구 회현동1가 산1-2	(149.54)	(149.54)					(2)		
	다-8	용산구 후암동 30-80	(608.58)	(608.58)					(6)	다-8	용산구 후암동 30-80	(608.58)	(608.58)					(6)		
	다-9	용산구 후암동 30-84	(1,056.43)	(1,056.43)					(7)	다-9	용산구 후암동 30-84	(1,056.43)	(1,056.43)					(7)		
	다-10	중구 회현동1가 산1-2	(171.96)	(171.96)					(1)	다-10	중구 회현동1가 산1-2	(171.96)	(171.96)					(1)		
다-11	중구 예상동 산5-6	(826.88)	(826.88)					(19)	다-11	중구 예상동 산5-6	(826.88)	(826.88)					(19)			

구	본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	다-12	중구 예장동 8-1	(945.70)	(945.70)	시멘트	(1)	(64.17)	(64.17)	(10)	다-12	중구 예장동 8-1	(945.70)	(945.70)	시멘트	(1)	(64.17)	(64.17)	(10)							
		다-13	중구 예장동 산5-6	(720.23)	(720.23)					(14)	다-13	중구 예장동 산5-6	(720.23)	(720.23)					(14)							
		다-14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218.91)	(218.91)					(6)	다-14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218.91)	(218.91)					(6)							
		다-15	중구 예장동 산5-6	(118.10)	(118.10)					(2)	다-15	중구 예장동 산5-6	(118.10)	(118.10)					(2)							
		다-16	중구 남산동2가 52-1	(145.71)	(145.71)					(12)	다-16	중구 남산동2가 52-1	(145.71)	(145.71)					(12)							
		다-17	중구 회현동1가 산1-2	(159.59)	(159.59)					(9)	다-17	중구 회현동1가 산1-2	(159.59)	(159.59)					(9)							
		다-18	중구 회현동1가 산1-16	(363.49)	(363.49)					(12)	다-18	중구 회현동1가 산1-16	(363.49)	(363.49)					(12)							
		다-19	중구 회현동1가 산1-2	(213.30)	(213.30)					(7)	다-19	중구 회현동1가 산1-2	(213.30)	(213.30)					(7)							
		소계			11,783.95	10,112.46		7	5,422.78	29,156.33	3			11,783.95	10,112.46		7	5,422.78	29,156.33	3						
교양 시설	남산시립도서관	5	용산구 후암동 30-84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5	용산구 후암동 30-84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안중근기념관	6	중구 남대문로5가 471	2,347.24	1,185.02	R/C	1	1,185.02	3,799.55		6	중구 남대문로5가 471	2,347.24	1,185.02	R/C	1	1,185.02	3,799.55								
	서울과학교육원	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봉수대	자	중구 예장동 산5-6	237.27	106.14						자	중구 예장동 산5-6	237.27	106.14												
	와룡묘	바	중구 예장동 산5-6	500.00	121.86	목조	4	121.86	121.86	3	바	중구 예장동 산5-6	500.00	121.86	목조	4	121.86	121.86	3							
	아외공연장	카	중구 회현동1가 100-177	847.14	847.14						카	중구 회현동1가 100-177	847.14	847.14												
	등상기념비	하		2,528.91	2,528.91						하		2,528.91	2,528.91												
	김유신장군상	하-1	중구 남창동 205-4	(340.00)	(340.00)						하-1	중구 남창동 205-4	(340.00)	(340.00)												
	김구상	하-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25.00)	(525.00)						하-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25.00)	(525.00)												
	이시영상	하-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181.41)	(181.41)						하-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181.41)	(181.41)												
	안중근의사상	하-4	용산구 후암동 30-80	(240.00)	(240.00)						하-4	용산구 후암동 30-80	(240.00)	(240.00)												
	정약용상	하-5	용산구 후암동 30-84	(112.50)	(112.50)						하-5	용산구 후암동 30-84	(112.50)	(112.50)												
	이항상	하-6	용산구 후암동 30-84	(180.00)	(180.00)						하-6	용산구 후암동 30-84	(180.00)	(180.00)												
조지훈시비	하-7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하-7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반공청년기념비	하-8	중구 예장동 산5-6	(850.00)	(850.00)						하-8	중구 예장동 산5-6	(850.00)	(850.00)													
소계			3,041.14	3,041.14					24			3,041.14	3,041.14					24								
운동 시설	배드민턴장	라		490.44	490.44						라		490.44	490.44												
		라-1	중구 예장동 산5-6	(163.48)	(163.48)						라-1	중구 예장동 산5-6	(163.48)	(163.48)												
	라-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326.96)	(326.96)						라-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326.96)	(326.96)													
	마		2,550.70	2,550.70					24	마		2,550.70	2,550.70					24								
	체력단련장	마-1	중구 남대문로5가 467	(158.81)	(158.81)						마-1	중구 남대문로5가 467	(158.81)	(158.81)												
		마-2	중구 예장동 산5-6	(1,439.00)	(1,439.00)					(12)	마-2	중구 예장동 산5-6	(1,439.00)	(1,439.00)					(12)							
		마-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759.64)	(759.64)					(3)	마-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759.64)	(759.64)					(3)							
		마-4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3.25)	(193.25)					(9)	마-4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3.25)	(193.25)					(9)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 시설	소계		22,948.34	22,935.23		11	4,381.79	17,596.98	35			22,948.34	22,935.23	11	4,380.82	17,595.31	35				
	주차장	나		8,055.33	8,055.33					14	나		8,055.33	8,055.33					14		
		나-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284.65)	(284.65)						나-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284.65)	(284.65)							
		나-2	중구 회현동1가 100-177	(1,299.77)	(1,299.77)					(9)	나-2	중구 회현동1가 100-177	(1,299.77)	(1,299.77)					(9)		
		나-3	용산구 후암동 30-84	(4,956.94)	(4,956.94)						나-3	용산구 후암동 30-84	(4,956.94)	(4,956.94)							
		나-4	용산구 후암동 30-84	(515.36)	(515.36)						나-4	용산구 후암동 30-84	(515.36)	(515.36)							
	나-5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998.61)	(998.61)						(5)	나-5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998.61)	(998.61)					(5)		
	화장실	2		243.24	230.13		4	451.22	268.09		2		243.24	230.13		4	230.13	268.09			
		2-1	중구 회현동1가 산1-2	(71.24)	(71.24)	R/C	(2)	(71.24)	(109.20)		2-1	중구 회현동1가 산1-2	(71.24)	(71.24)	R/C	(2)	(71.24)	(109.20)			
		2-2	중구 예장동 산5-6	(97.50)	(97.50)	R/C	(1)	(97.50)	(97.50)		2-2	중구 예장동 산5-6	(97.50)	(97.50)	R/C	(1)	(97.50)	(97.50)			
	서울타워	2-3	용산구 후암동 30-84	(74.50)	(61.39)	R/C	(1)	(61.39)	(61.39)		2-3	용산구 후암동 30-84	(74.50)	(61.39)	R/C	(1)	(61.39)	(61.39)			
		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1	2,502.16	13,776.56	15	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1	2,502.16	13,776.56	15		
	매점	4		446.93	446.93		3	284.18	470.98		4		446.93	446.93		3	284.18	470.98			
		4-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310.85)	(310.85)	R/C	(1)	(148.10)	(262.81)		4-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310.85)	(310.85)	R/C	(1)	(148.10)	(262.81)			
		4-2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136.08)	(136.08)	복구조, R/C	(2)	(136.08)	(208.17)		4-2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136.08)	(136.08)	복구조, R/C	(2)	(136.08)	(208.17)			
	삭도	사	중구 회현동1가 산1-19	1,321.30	1,321.30		2	973.58	2,094.50		사	중구 회현동1가 산1-19	1,321.30	1,321.30		2	972.61	2,092.83			
	삭도하단승강장			(561.25)	(561.25)	R/C	(1)	(561.25)	(1,682.17)				(561.25)	(561.25)	R/C	(1)	(560.28)	(1,680.50)			
	삭도주차장			(760.05)	(760.05)								(760.05)	(760.05)							
	기념물관매장					R/C	(1)	(412.33)	(412.33)						R/C	(1)	(412.33)	(412.33)			
	한국삭도(종점)	아	중구 예장동 산5-6	1,388.40	1,388.40	R/C	1	391.74	986.85		아	중구 예장동 산5-6	1,388.40	1,388.40	R/C	1	391.74	986.85			
경사형엘리베이터	차	중구 회현동1가 산1-32	117.13	117.13						차	중구 회현동1가 산1-32	117.13	117.13								
약수터	파	중구 예장동 산5-6	477.41	477.41					6	파	중구 예장동 산5-6	477.41	477.41					6			
	파-1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파-1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파-2	중구 예장동 산5-6	(377.41)	(377.41)					(6)	파-2	중구 예장동 산5-6	(377.41)	(377.41)					(6)			
관리 시설	소계		586.31	586.31		1	317.00	419.90				586.31	586.31		1	317.00	419.90				
	관리사무소	1	용산구 후암동 30-84	586.31	586.31		1	317.00	419.90		1	용산구 후암동 30-84	586.31	586.31		1	317.00	419.90			
	남산가압장																				
녹지 및 기타	소계		481,153.93									481,153.93									
	녹지및기타		481,153.93									481,153.9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8,883.00	31,622.00				
당초	중로	계			2,075.00	4,500.00				
당초		1	1	20	895.0	(17,9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2	20	880.0	(17,6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1	15	300.0	4,50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당초	소로	소계			2,269.00	14,030.00				
당초		1	2	10	267.0	2,670.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3	
당초		3	1	10	65.0	650.00	산책로	소로 1-2	산책로37	
당초		3	9	6	281.0	1,686.00	부진입로	중로 1-1	공원경계	
당초		3	2	6	336.0	2,016.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주차장5	
당초		3	3	6	535.0	3,21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남산타워	
당초		3	4	4	82.0	328.00	산책로	소로 3-2	남산타워	
당초		3	5	4	45.0	180.00	산책로	소로 3-3	남산타워	
당초		3	6	5	479.0	2,395.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중로 1-2	
당초		3	7	5	164.0	820.00	산책로	중로 1-2	남산3호터널	
당초		3	8	5	15.0	75.00	산책로	중로 1-1	공원경계	
당초		소계			4,539.00	13,092.00				
당초		-	35	5	34.0	170.00	산책로	중로 1-2	주차장3	
당초		-	44	3	130.0	390.00	등산로	중로 1-2	화장실1	
당초	-	45	4	637.0	2,548.00	등산로	화장실1	광장8		
당초	-	46	2	157.0	314.00	등산로	중로 1-1	산책로45		
당초	-	47	3	56.0	168.00	등산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48	3	159.0	477.00	등산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49	1.5	13.0	19.50	등산로	산책로52	산책로51		
당초	-	50	1.5	66.0	99.00	등산로	휴게소6	소로 3-6		
당초	-	51	3	56.0	168.00	등산로	공원경계	반공청년기념비		
당초	-	52	2	79.0	158.00	등산로	공원경계	약수터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	53	2	34.0	68.00	등산로	산책로52	소로 3-6	
당초	-	-	1	4	400.0	1,600.00	산책로	광장1	산책로33	
당초	-	-	2	2	316.0	632.00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31	
당초	-	-	3	3	278.0	834.00	산책로	중로 1-1	산책로2	
당초	-	-	4	2	50.0	10.00	산책로	중로 1-1	산책로3	
당초	-	-	5	2	11.0	22.0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	
당초	-	-	6	2	17.0	34.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당초	-	-	7	2	15.0	30.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당초	-	-	8	2	46.0	92.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당초	-	-	9	2	16.0	32.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0	
당초	-	-	10	2	77.0	154.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12	
당초	-	-	11	2.5	8.00	20.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10	
당초	-	-	12	3	82.00	246.00	산책로	중로1-2	산책로10	
당초	-	-	13	1.5	48.00	72.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0	
당초	-	-	14	1.5	160.00	240.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	-	15	4	11.00	44.00	산책로	중로1-2	산책로12	
당초	-	-	16	2	125.00	250.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	산책로	17	2	14.0	28.00	산책로	산책로2	휴게소1	
당초	-	-	18	2	16.0	32.00	산책로	휴게소1	휴게소2	
당초	-	-	19	2	31.0	62.00	산책로	휴게소2	휴게소3	
당초	-	-	20	2	12.0	24.00	산책로	휴게소3	산책로21	
당초	-	-	21	2	81.0	162.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휴게소4	
당초	-	-	22	2	9.0	18.00	산책로	휴게소4	중로 2-1	
당초	-	-	23	2	19.0	38.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녹지	
당초	-	-	24	2	31.0	62.0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5	
당초	-	-	25	2	19.0	38.00	산책로	휴게소2	녹지	
당초	-	-	26	2	15.0	30.00	산책로	산책로25	체력단련장1	
당초	-	-	27	2	59.0	118.0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3	
당초	-	-	28	2	17.0	34.00	산책로	산책로23	중로 2-1	
당초	-	-	29	3	12.0	36.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31	
당초	-	-	30	4	19.0	76.00	산책로	산책로1	김구상	
당초	-	-	31	4	297.0	1,188.00	산책로	김구상	산책로42	
당초	-	-	32	2	45.0	90.00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1	
당초	-	-	33	3	17.0	51.00	산책로	중로 1-2	중로 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	34	6	49.0	294.00	산책로	중로 2-1	주차장3	
당초	-	-	36	2	78.0	156.00	산책로	산책로31	광장3	
당초	-	-	37	4	85.0	340.00	산책로	소로 1-2	안중근기념관	
당초	-	-	38	2	162.0	324.00	산책로	산책로39	광장5	
당초	-	-	39	2	53.0	106.00	산책로	정양용상	주차장1	
당초	-	-	40	3	10.0	30.00	산책로	광장4	산책로31	
당초	-	-	41	3	200.0	600.00	산책로	광장4	화장실3	
당초	-	-	42	1.5	85.0	127.50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43	
당초	-	-	43	2	23.0	46.00	산책로	산책로42	화장실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2호

**남산4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9(2009.01.15)호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53호(2010.04.29)호로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구 이태원동 260-267일대 남산4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산공원 한남자락의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존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편익 및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용산구 이태원동 260-267 일대

3. 면 적 : 144,00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15-7590) 및 중부푸른도시사업소(☎3783-5970)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4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용산구 이태원동 260-267번지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4,006.00	22,166.87	3	338.52	669.67	125		144,006.00	22,166.87	3	338.52	669.67	125	
기반시설	소계	15,434.14	15,434.14				82	15,434.14	15,434.14				82	
	도로	13,801.00	13,801.00				(76)	13,801.00	13,801.00				(76)	
	광장	1,633.14	1,633.14				(6)	1,633.14	1,633.14				(6)	
조경시설	959.32	959.32				2	959.32	959.32				2		
유희시설														
휴양시설	1,629.03	1,629.03				16	1,629.03	1,629.03				16		
교양시설														
운동시설	146.97	146.97				12	146.97	146.97				12		
편익시설	4,042.52	3,997.41	3	338.52	669.67	13	4,042.52	3,997.41	3	338.52	669.67	13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121,794.02		(1)	(805.00)	(805.00)		121,794.02		(1)	(805.00)	(805.00)			
공원시설률 (법정 40%)	22,166.87 / 144,006.00 x 100 = 15.39%							22,166.87 / 144,006.00 x 100 = 15.39%						
공원건폐율 (법정 10%)	338.52 / 144,006.00 x 100 = 0.24%							338.52 / 144,006.00 x 100 =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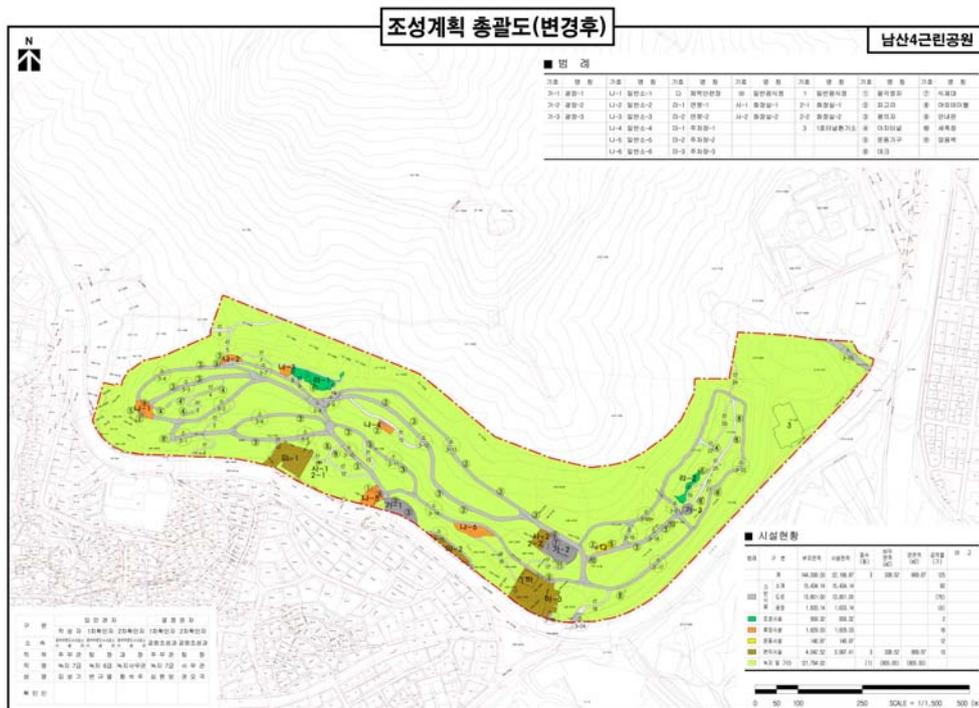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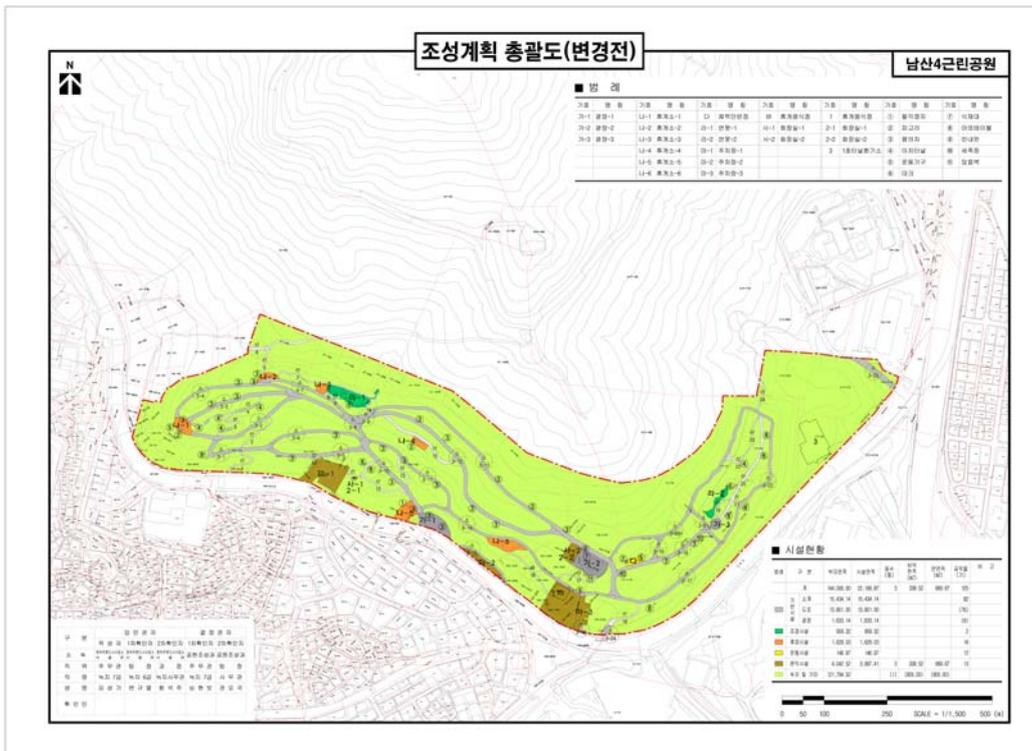
나. 시설 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44,006.00	22,166.87		3	338.52	669.67	125		합 계			144,006.00	22,166.87		3	338.52	669.67	125		
기반 시설	소계			15,343.14	15,343.14					82		소계			15,343.14	15,343.14					82		
	도로			13,801.00	13,801.00					76		도로			13,801.00	13,801.00					76		
	광장	가			1,633.14	1,633.14					6		가			1,633.14	1,633.14					6	
		가-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622.87)	(622.87)					(6)		가-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622.87)	(622.87)					(6)	
		가-2	용산구 이태원동 258-374		(855.47)	(855.47)							가-2	용산구 이태원동 258-374		(855.47)	(855.47)						
가-3	용산구 한남동 772-16		(154.80)	(154.80)							가-3	용산구 한남동 772-16		(154.80)	(154.80)								
조경 시설	소계			959.32	959.32					2		소계			959.32	959.32					2		
	연못	라		959.32	959.32					2		라			959.32	959.32					2		
		라-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696.22)	(696.22)					(1)		라-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696.22)	(696.22)					(1)	
라-2	용산구 한남동 772-4 외 1필지		(263.10)	(263.10)						(1)		라-2	용산구 한남동 772-4 외 1필지		(263.10)	(263.10)					(1)		
휴양 시설	소계			1,629.03	1,629.03					16		소계			1,629.03	1,629.03					16		
	휴게소	나		1629.03	1629.03					16		나			1629.03	1629.03					16		
		나-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321.08)	(321.08)					(6)		나-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321.08)	(321.08)					(6)	
		나-2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47.72)	(147.72)					(3)		나-2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47.72)	(147.72)					(3)	
		나-3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42.63)	(142.63)							나-3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42.63)	(142.63)						
		나-4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60.00)	(160.00)					(3)		나-4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60.00)	(160.00)					(3)	
		나-5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410.05)	(410.05)					(1)		나-5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410.05)	(410.05)					(1)	
나-6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447.55)	(447.55)					(3)		나-6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447.55)	(447.55)					(3)			
운동 시설	소계			146.97	146.97					12		소계			146.97	146.97					12		
	체력단련장	다	용산구 한남동 772-12	146.97	146.97					12		체력단련장	다	용산구 한남동 772-12	146.97	146.97					12		
편익 시설	소계			4,042.52	3,997.41		3	338.52	669.67	13		소계			4,042.52	3,997.41		3	338.52	669.67	13		
	주차장	마		2,015.88	2,015.88							마			2,015.88	2,015.88							
		마-1	용산구 이태원동 258-59		(1,249.98)	(1,249.98)						마-1	용산구 이태원동 258-59		(1,249.98)	(1,249.98)							
		마-2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314.40)	(314.40)						마-2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314.40)	(314.40)							
	마-3	용산구 이태원동 258-376		(451.50)	(451.50)						마-3	용산구 이태원동 258-376		(451.50)	(451.50)								
	휴게음식점	바	용산구 이태원동 258-148	1,620.53	1,620.53	조적조	1	212.96	544.11	7		일반음식점	바	용산구 이태원동 258-148	1,620.53	1,620.53	조적조	1	212.96	544.11	7		
화장실	사			406.11	361.00		2	125.56	125.56	6		사			406.11	361.00		2	125.56	125.56	6		
	사-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00.00)	(54.89)	조적조+원주직재	(1)	(54.89)	(54.89)			사-1	용산구 이태원동 259-16		(100.00)	(54.89)	조적조+원주직재	(1)	(54.89)	(54.89)			
사-2	용산구 이태원동 258-138		(306.11)	(306.11)	철근콘크리트	(1)	(70.67)	(70.67)	(6)		사-2	용산구 이태원동 258-138		(306.11)	(306.11)	철근콘크리트	(1)	(70.67)	(70.67)	(6)			
녹지 및 기타	소계			121,794.02			(1)	(805.00)	(805.00)			소계			121,794.02			(1)	(805.00)	(805.00)			
	1호터널환기소	3	용산구 한남동 772-3	3,677.00		철근콘크리트	(1)	(805.00)	(805.00)			1호터널환기소	3	용산구 한남동 772-3	3,677.00		철근콘크리트	(1)	(805.00)	(805.00)			
	녹지		전지역	118,117.02								녹지		전지역	118,117.02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3,801.0				
소 계						11,203.0				
당초	소로	3	1	5		485.0	산책로	소로 3-2	소로 3-6	
당초		3	2	3		420.0	산책로	휴게소 나-1	소로 3-4	
당초		3	3	4		512.0	산책로	휴게소 나-1	소로 3-4	
당초		3	4	3		675.0	산책로	휴게소 나-1	소로 3-8	
당초		3	5	4		460.0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0	
당초		3	6	3		339.0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0	
당초		3	7	4		440.0	산책로	소로 3-4	소로 3-8	
당초		3	8	5		225.0	산책로	소로 3-7	소로 3-10	
당초		3	9	8		208.0	산책로	소로 3-8	소로 3-13	
당초		3	10	5		565.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8	
당초		3	11	3		405.0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4	
당초		3	12	4		1,180.0	산책로	소로 3-9	소로 3-13	
당초		3	13	3		1,179.0	산책로	소로 3-9	소로 3-17	
당초		3	14	3		672.0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6	
당초		3	15	3		210.0	산책로	이태원동 259-16	이태원동 산1-114	
당초		3	16	3		75.0	산책로	이태원동 258-378	주차장 마-3	
당초		3	17	3		597.0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22	
당초		3	18	4		480.0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21	
당초		3	19	3		84.0	산책로	소로 3-18	소로 3-20	
당초		3	20	3		366.0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22	
당초		3	21	4		212.0	산책로	소로 3-17	소로 3-20	
당초		3	22	3		1,020.0	산책로	소로 3-17	소로 3-20	
당초		3	23	5		310.0	산책로	한남동 726-521	한남동 산10-57	
당초		3	24	7		84.0	산책로	한남육교	산책로 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2,598.0				
당초		-	1	1.5	53.0	79.5	산책로	이태원동 260-373	소로 3-1	
당초		-	2	1.5	55.0	82.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당초		-	3	1.5	65.0	97.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4	
당초		-	4	1.5	97.0	145.5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	5	2.0	105.0	210.0	산책로	이태원동 산1-60	휴게소 나-2	
당초		-	6	4.0	22.0	88.0	산책로	이태원동 산1-60	산책로 5	
당초		-	7	1.5	122.0	183.0	산책로	휴게소 나-2	산책로 14	
당초		-	8	1.5	18.0	27.0	산책로	휴게소 나-3	이태원동 259-16	
당초		-	9	1.5	4.0	6.0	산책로	소로 3-7	이태원동 259-16	
당초		-	10	2.5	6.0	15.0	산책로	주차장 마-1	소로 3-5	
당초		-	11	1.5	18.0	27.0	산책로	주차장 마-2	산책로 12	
당초	산	-	12	2.0	89.0	178.0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0	
당초		-	13	2.0	40.0	80.0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10	
당초	책	-	14	1.5	30.0	45.0	산책로	소로 3-9	이태원동 259-16	
당초		-	15	3.0	122.0	366.0	산책로	소로 3-12	소로 3-12	
당초	로	-	16	1.5	70.0	105.0	산책로	휴게소 나-7	이태원동 258-148	
당초		-	17	1.5	55.0	82.5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14	
당초		-	18	2.0	49.0	98.0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17	
당초		-	19	1.5	33.0	49.5	산책로	광장 가-3	산책로 20	
당초		-	20	3.0	136.0	408.0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22	
당초		-	21	1.5	8.0	12.0	산책로	소로 3-22	산책로 20	
당초		-	22	2.0	30.0	60.0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3-22	
당초		-	23	1.5	60.0	90.0	산책로	산책로 22	산책로 20	
당초		-	24	1.5	42.0	63.0	산책로	한남동 산10-58	소로 3-22	
					-	이	하	여	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아현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1,088,000

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총 계				1,088,000	
촉진 구역	소 계			591,896	
	주택개발사업	아현3구역	아현동 635번지 일원	207,527	
		공덕5구역	공덕동 175번지 일원	42,713	
		염리2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576	
		염리3구역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840	
		염리4구역	염리동 9번지 일원	38,809	
		염리5구역	염리동 105번지 일원	81,426	
촉진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마포로6구역	공덕동 385번지 일원	16,857	
	주택재건축사업	아현2구역	아현동 662번지 일원	65,148	
존치 구역	마포로2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 존치		대흥동 28번지 일원	496,104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 (1) 대상지역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 (2) 대상면적 : 1,088,000㎡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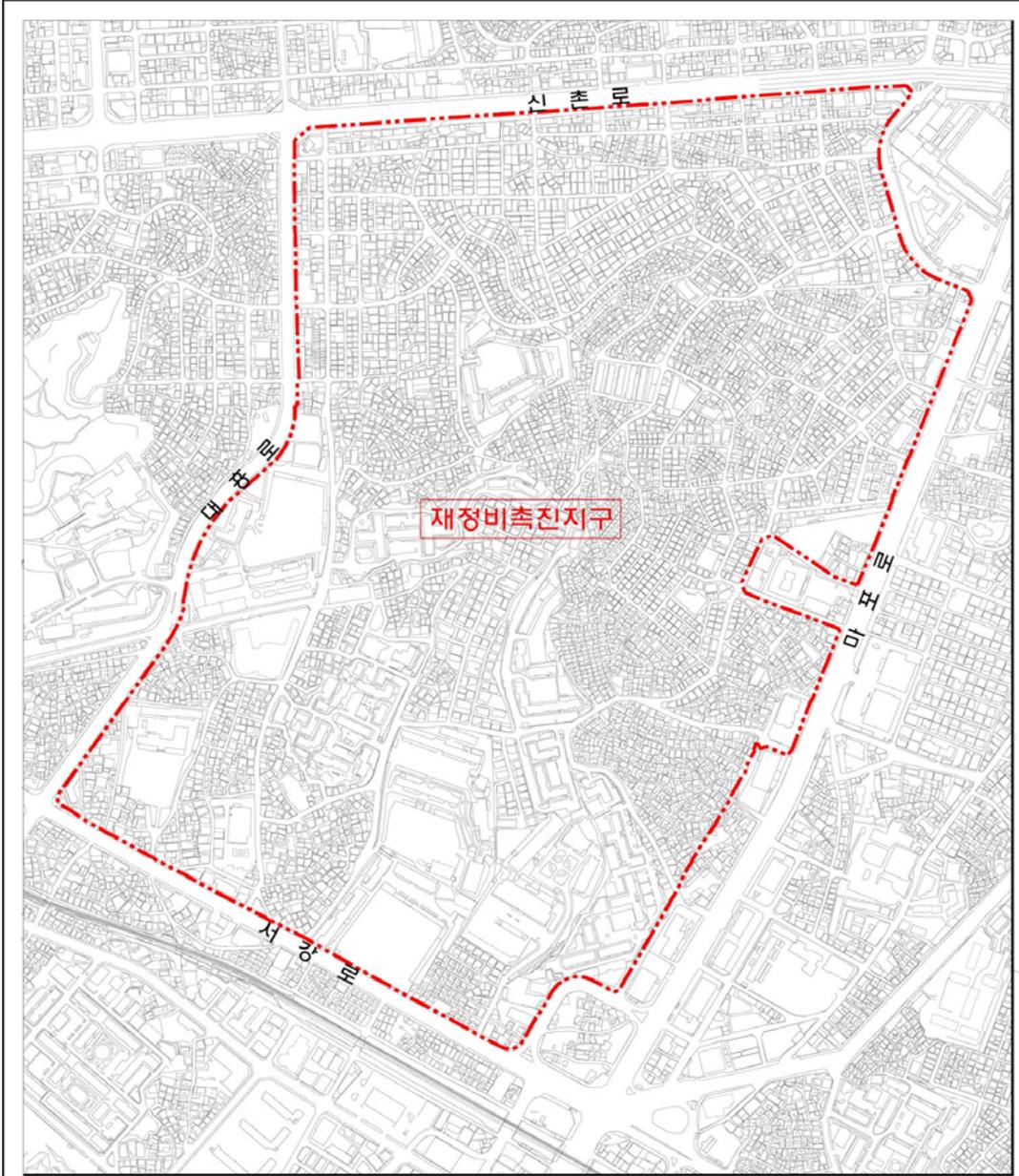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8조에 의함

마. 관계서류 및 도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2645) 및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153-93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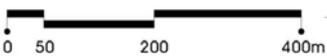
[지형도면]



 재정비촉진지구

PROJECT TITLE 사업명칭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4호

**남태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13(2009.1.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남태령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자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99-21번지 일대

3. 면 적 : 13,5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15-7594)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880-3677)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남태령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99-32호 일대

구 분	최		초			공작물 (기)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3,500.00	634.99		-	-	4		
기 반 시 설	소 계	372.34	372.34				2	
	도 로	128.22	128.22					
	광 장	244.12	244.12				(2)	
조 경 시 설	234.97	234.97						
휴 양 시 설	27.68	27.68					2	
녹지 및 기타	12,865.01							
공원시설율 (법정40%)	$(634.99\text{m}^2 / 13,500.0\text{m}^2) * 100\% = 4.7\%$							
건폐율	$(0\text{m}^2 / 13,500.0\text{m}^2) * 100\% = 0\%$							

나. 시설조사

구분	시설명	최 초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500.0	634.99					4	
기반 시설	소계			372.34	372.34					2	
	도로			128.22	128.22						
	광장	가		147.53	147.53					(2)	
		나		96.59	96.59						
조경 시설	소계			234.97	234.97						
	파고라	①		16.00	16.00						
	원형의자	②		4.32	4.32						
	계류	③		214.65	214.65						
휴양 시설	소계			27.68	27.68					2	
	데크쉼터	다		27.68	27.68					(2)	
녹지 및 기타				12,865.01							

다. 도로조사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62.26	128.22				
신 설	산책로	소계			62.26	128.22				
신 설	산책로		1	3	25.22	72.66	산책로	파고라①	광장 가	
신 설	산책로		2	1.5	37.04	55.56	산책로	광장 가	광장 나	

**공 고**

◆ 서울시공고 제2010-144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 및 말소 내역

연번	상호	대표자	등록말소일자	등록번호	주된영업소 소재지 (단, 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재)	비고
※ 공고명단(13건) 따로붙임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 말소일자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고
1	(주)씨앤아이레저산업	이성남	2010-07-26	서울080124	서초구 서초동 1685-4 한샘빌딩6층	자사사정	전출
2	(주)위드스니어스	윤복근	2010-07-09	서울080316	양천구 신정동 1267 목동뉴프라자 205호	자사사정	폐업
3	(주)모인종합개발	장봉수	2010-07-26	서울080335	서초구 양재동 3-9 광성빌딩 2층	자사사정	폐업
4	(주)유빅스종합건축사사무소	정효환	2010-07-13	서울090110	강남구 역삼동 835 6층	자사사정	폐업
5	창세개발	조근식	2010-07-01	서울100055	송파구 방이동 51 서경빌딩 2층	16,323,640	신규 등록
6	리오파크산업개발(주)	최상희 현승남	2010-07-01	서울100056	성동구 하왕십리동 878-2 1층	800,000	신규 등록
7	(주)정림이앤씨	어운찬	2010-07-05	서울100057	강남구 신사동 567-21 구미빌딩501호	1,000,000	신규 등록
8	(주)호빈	황정연	2010-07-07	서울100058	송파구 가락동 108-5 401호	500,000	신규 등록
9	(주)숏터종합건축사사무소	양정기	2010-07-07	서울100059	강동구 성내동 460-2 그린빌딩 303호	500,000	신규 등록
10	(주)백영	이영순	2010-07-09	서울100060	성동구 성수동2가 277-47	700,000	신규 등록
11	에스엠디종합건설(주)	최영희 김재봉	2010-07-12	서울100061	서초구 반포동 747-14 유성빌딩3층	600,000	신규 등록
12	(주)건생씨앤디	이석두	2010-07-16	서울100062	서대문구 홍제동 453 무악청구아파트 상가동 2층203호	500,000	신규 등록
13	(주)태혁건설	하승완	2010-07-23	서울100063	성동구 홍익동 134 4층	750,000	신규 등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73호

「세계 빈곤퇴치의 날」 기념 사업 모집공고

「세계 빈곤퇴치의 날(매년 10.17)」을 기념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을 위한 민간자원개발 및 홍보 등 사업을 공개모집 추진함으로써 서울형 자립복지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사회적 기부분위기를 조성코자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자산형성 및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간후원사업 개발 및 홍보
- 안정적·정기적인 후원기부처 개발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부분위기 조성사업 등

2. 사업자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공동모금회와 사업 협력이 가능한 단체
  -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지부·지회(또는 분소)에 한함
- 제외 대상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3. 사업기간 : 2010. 9월 ~ 12월

4. 사업비 및 지원규모 : 190백만원 (1개단체 1개사업 지원)

5. 제출서류(서울시홈페이지 및 복지국홈페이지(<http://welf.seoul.go.kr>(새소식), 블로그(서울시와 함께 일어사자:[seoulwelfare.tistory.com](http://seoulwelfare.tistory.com),여러분이 희망입니다 [blog.never.com/seoulhopea](http://blog.never.com/seoulhopea)) 게시

-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휴대폰)기재) ..... 1부
  - ② 「세계빈곤퇴치의 날」 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 ③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서(소정양식) ..... 2부
  - ④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 1부
  -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현황(상근직원명단 포함) ..... 2부
  -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2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기간 및 장소 (반드시 방문접수에 한정함 : 우편접수 불가)

- 가. 기 간 : 2010. 8. 23(월) ~ 8. 27(금) (평일09:00~18:00 토.일 제외)
-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대한상공회의소 13층 ☎02-3707-9197)

- 7.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의·선정
- 8. 선정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 복지국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74호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서울특별시 의회	직위(직급)	의 원	성 명	이원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주이시티앤	10,000	매각	50,000	2010.07.28	(주)해안
계		10,000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85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처분 현황

구분	처분대상 (대표자)	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설비감리 전문회사	(주)한국해사기술 (신동식)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	- 업무정지67일 - 업무정지기간 2010.08.20~ 2010.10.25	- 등록기준 위반 (감리원 미확보)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14호 - 동법시행규칙제40조의2 「별표17」 2.개별기준 하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87호

**건설업 영업정지(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시정명령)을 위반한 아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0.08.13(금) ~ 2010.08.27(금)
2. 공고내용

업체명·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주)병건종합건설 오 광 연	건축공사업 01-165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20-4	실태조사 관련 자료미제출 시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2개월 (2010.08.01 ~2010.09.30)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3. 기타사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관리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습니다.
-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7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 있게 되며,
- 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등록기준 미달로 제재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행정담당관 ☎ (02) 3707-9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90호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공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변경 승인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 가. 열람내용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 나. 열람기간 : 2010. 8. 20 ~ 2010. 9. 20
- 다.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전화 2110-619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전화 6360-4735)  
각 자치구 도시계획관련부서
-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9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조례안 (6)	1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디자인기획담당관)
	2	서울특별시 무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3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복지정책과)
	5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위생과)
	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동의안(2)	7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경쟁력강화본부 (국제협력담당관)
의견 청취안 (2)	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광진구 중곡동 639-1번지 일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94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보관일자	채 주(법인명)	예치사유(적요)	귀속대상금액	비고
2001.06.30	자연엔지니어링	2001년 와우36블럭 배급수관정비공사 하자보증금	1,112,045원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부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지출담당 (☎ 3146-3513)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0-12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	부 의 안 건	제 출 자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기획예산담당관)	
2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기획예산담당관)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6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초등교육정책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0-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96호(2010.5.27)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중구 신당동 844-10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490호(2010.7.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4-10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응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 1) 면 적 : 건축면적 76.99㎡, 연면적 65.64㎡
- 2) 내 용 :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신축(지상1층)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0. 11. 30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중구 배오개길 76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신당동 844-10	공원	12004.3	12004.3		서울 특별시					

◆ 중구고시 제2010-6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60호 외1필지에 사회복지시설인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중 구 청 장

1. 결정취지

-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보육관련 부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 시설	신당동 292-60호 외1필지	-	증)608	6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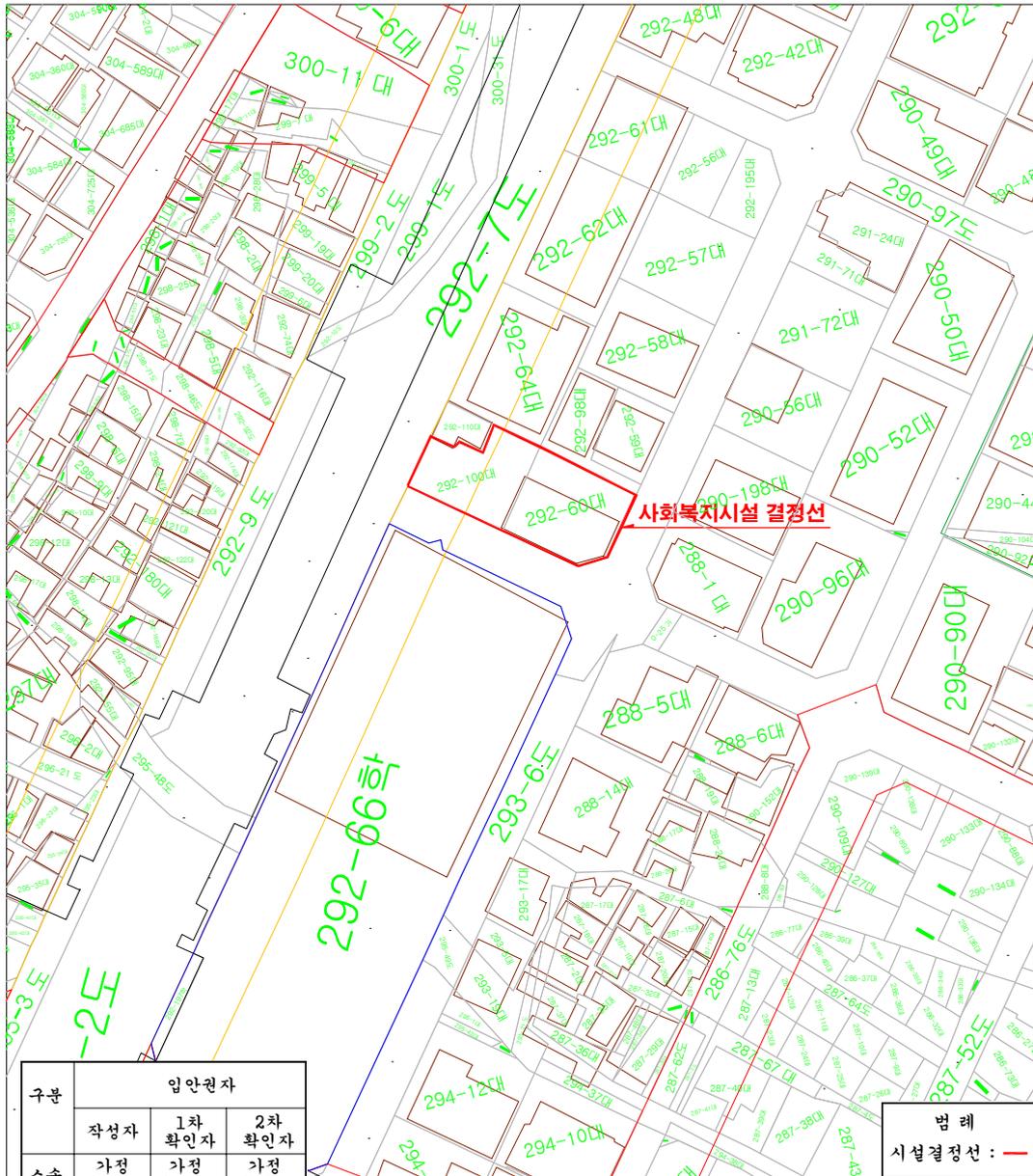
3. 관련도면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3396-5750) 및 토지관리과(☎3396-59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5.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60외 1필지, S=1:1,000 )



구분	입안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위	담당	보육지원팀장	과장
성명	박미영	김주래	심복섭
확인원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신당동 292-60외 1필지	-	증)608	608	-	-

◆ 양천구고시 제2010-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양 천 구 청 장

가.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처분 근거
2010-3	서울-주택 2002-0262	(주)스타코넷 110111-1684699	김승제	양천구 목1동 406-21	등록말소	자진반납	주택법 13조
2010-4	서울-주택 2003-0575	(주)이스타코 124311-0006042	김승제	양천구 목1동 406-21, 대학빌딩 5층	''	''	''
2010-5	서울-주택 2005-0034	(주)목동중심축제1구역일 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 114971-0002481	김영서 최을수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2005호	''	''	''
2010-6	서울-주택 2001-0194	(주)테바건설 110111-2009466	김희영	양천구 신정4동 1013-4, 성배법조빌딩 702	영업정지 3개월 (*10.8.20~ 11.1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확보)	''
2010-7	서울-주택 2007-0110	호인에프건설(주) 110111-2788028	박도영	양천구 신월7동 981-2	''	''	''
2010-8	서울-주택 2002-0214	담덕종합건설(주) 110111-2541872	박종남	양천구 신정4동 1010-9, 신영빌딩 2층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법 13조
2010-9	서울-주택 2004-0002	(주)모덴딤 110111-2886517	최덕환	양천구 신월1동 128. 태현프라자 302호	''	''	''
2010-10	서울-주택 2001-0046	한불건설산업(주) 110111-2672205	신광수	양천구 신정4동 952-5. 재승빌딩 4층	''	변경신고 지연	''

나. 처 분 일 : 2010. 8. 11

◆ 양천구고시 제2010-28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1호(2006.04.20)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제32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양 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구분	위치	면적(㎡)	세부변경내용	비고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양천구 목동 919-7	10,578.4	대지 북측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대지경계선에 접하여 15m)	
	변경	양천구 목동 919-7	10,578.4	대지 북측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대지경계선에서 17m 이격 후 허용구간 7m 설치)	

2.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외 변경사항 : 없음.

3.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같음 함.

4.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0-5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시고시 제135호(1978.4.3), 서울시고시 제460호(1978.9.8)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08호(1983.8.3)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의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사실상 학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학교시설 편입에 다른 도시계획 시설(학교, 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고교	내발산동 산59-2일대	37,258.9	증)1,859.1	39,118	197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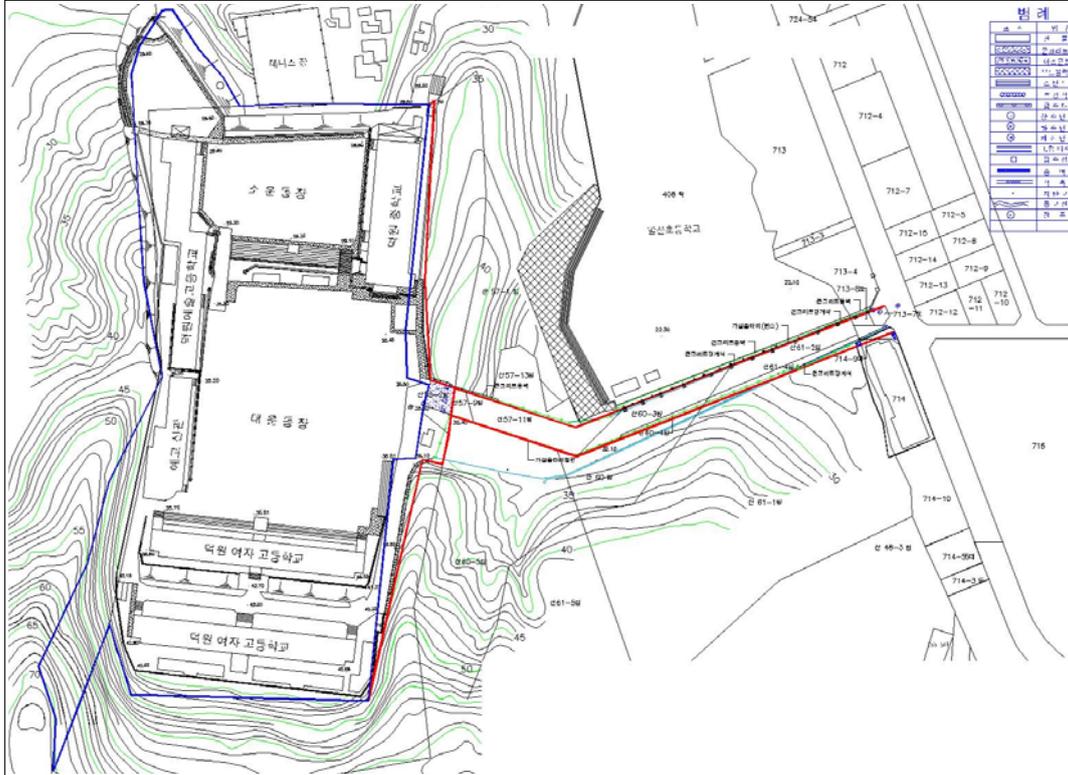
※ 건축물의 범위 : 변경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류		12	국지 도로	215	내발산동 산58	내발산동 436-3	일반 도로	1978.9.8	학교편입에 따른 연장감소
변경	중로	3류		12	국지 도로	205	내발산동 산58	내발산동 713-4	일반 도로		

라.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2) 비치도면과 같음.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영등포구고시 제2010-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36.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77호('62.12.8)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125호('09.2.12)로 열람공고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7호('09.3.12)로 인가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12호('09.4.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63호('09.12.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3호('10.1.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6호('10.1.27)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11호('10.3.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변경 없음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일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2001-9 ~ 신길동 2001-13	B=13.5~15m L=140m	인가일로 부터 3년	·시설결정 :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36.12.26) ·지적고시 : 건설부고시 제177호 ('62.12.8)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변경 없음

다.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 385-1) - 변경 없음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 변경 없음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사.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도로과(☎2670-3811)에 관계 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 건 조 서**

1. 사업명 :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4.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5. 물건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신길동	2001-15	건물 (지하층- 사파이어 룸)	철근 콘크리트	10.1㎡ (높이 3.9m)	국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3가 1번지)				
	변경											

영 업 권 조 서

1. 사 업 명 :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4.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5. 영업권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관리의 종 류	상 호	업 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 류	
1	기정	신길동	2001-15	영업권	해군호텔	호텔업 (숙박업)	서울 복지 지원대 (김영수)	영등포구 신길동 897 사서함 897				
	변경											

**구 공 고**

◆ 구로구공고 제2010-577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 1. 도로의 종류 : 간선도로(서부간선)
- 2. 노선명 : 서부간선도로 구일3길
- 3. 공사의 종류 : 롯데물류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 4. 구간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9-22부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19-16 까지
- 5. 공사시행장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6. 착수예정일 : 2010년 8월 일
- 7.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8. 이유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부간선도로에서 롯데광명물류센터로의 진입관련 도로확·포장사업을 실시하여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통행에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송파구공고 제2010-8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운동장 : 올림픽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26호(1995.11.24)로 세부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2호(2008. 9. 4)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된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 올림픽공원)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률 제9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방이동 88-2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운동장 : 올림픽공원)
- 명 칭 : 운동시설 내 올림픽홀, 경륜고객홀, 펜싱경기장 증축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세부시설명 : 운동시설 (변경없음)
  - 부 지 면 적 : 565,958.6㎡
  - 건축연면적 : 144,796.66㎡→153,296.46㎡ (증 8,499.8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1. 9.30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없음
- 사. 위치도, 계획평면도, 건축물내역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아.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자. 열 람 장 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2147-2933)

◆ 강동구공고 제2010-755호

방죽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79호(1978.4.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5호(2002.6.26)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강동구 고덕동 296번지 방죽근린공원의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강 동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번지
2. 공원면적 : 87,748.6㎡
3. 조성계획 변경(안)
  - 교양시설
    - 도서관 바닥면적 : 1,650.20㎡ → 2,385.20㎡ (증735.00㎡)
    - 도서관 연 면 적 : 2,960.22㎡ → 4,462.92㎡ (증1,502.70㎡)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
6. 열람장소 : 강동구 푸른도시과 (☎02-480-1395)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0-1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3. 점용자의 주소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번지
- 4. 점 용 위 치 : 한강, 한강철교 B선
- 5. 점 용 면 적 : 선박2척(기선 : 라인원11호, 부선 : 강산2호)
- 6. 점 용 목 적 : 한강교량 B선 강형재 도장공사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 철거시 선박사용
- 7. 점 용 기 간 : 2010. 8. 12. ~ 2010. 8.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0-1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광장 T&B
- 3. 점용자의 주소 : 강동구 천호동 465-10 2층
- 4. 점 용 위 치 : 강서구 개화동 164-2
- 5. 점 용 면 적 : 선박8척
- 6. 점 용 목 적 : 수상정박
- 7. 점 용 기 간 : 2010. 8. 13. ~ 2010.10.31.

**사업소공고**

◆ 서울특별시서북병원공고 제2010-23호

**병원장 직인 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 직인을 신규등록하고 동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1. 직인등록 및 폐기 사유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4764호)

2.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등록사유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한글전서체 2.5cm×2.5cm		'10. 8. 14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거 (조례 제4764호)

3. 폐지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등록사유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장	한글전서체 2.5cm×2.5cm		'10. 8. 1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거 (조례 제4764호)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0-30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동대문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동대문 2010-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식회사 대성파워텍	차의환 (1965.10.8.)	동대문구 휘경동 43-230	2010.8.11.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0-31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동대문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동대문 2010-9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주식회사 한울이엔지	김희식 (1955.3.11.)	동대문구 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414호	2010.8.16.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0-19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지위승계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초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초 2010-14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분야)	주식회사 삼성감리엔지니어링	한정희 (550310-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8-13	2010. 8.12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0-20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지위승계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제서초 2010-15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분야)	주식회사 신우기술단	나선균 (670326-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5-10 신흥빌딩 2층	2010. 8.12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 2010-21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 신규등록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안전성능시험업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제2010-1호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업	주식회사 인스펙트	이영식 (471005-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42 용진빌딩 3층	2010.8.16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소방서공고 제2010-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였기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강 동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적 용 법 조 항
소방시설 관리업 [제강동 2010-03호] (2010. 8. 13.)	(주)에프에스텍	백정우 (690925- 1*****)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8-4 다성이즈빌308 (☎ 488-7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02-471-0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